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무경찰의 장애등급 구분에 따른 보상금 지급금액

(제8조제2항 관련)

등급	장애의 정도	보상금 지급금액
1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1급부터 제7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3,000만원 초과 5,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의 정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2급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8급부터 제12급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0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의 정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3급	1.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별표 3의 장애등급 제13급 및 제14급에 해당하는 사람 2. 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 동의대 사건 당시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 기능장애 또는 정신질환이 발생하였다고 의학적으로 인정된 사람으로서 명예회복위원회가 보상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2,0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장애의 정도,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명예회복위원회가 결정하는 금액

비고

1. 한 사람이 둘 이상의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중 높은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2. 장애등급 구분을 위한 세부 기준에 관해서는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제40조 제4항을 준용한다.